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

('21.4.22 / 장애인서비스과)

□ 개요

○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·중·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

□ 지원대상 및 내용

○ **(대상) '03년 ~ '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(초·중·고 재학생 포함)**

* '03년~'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경우,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
*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'03년~'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'재학생'은 지원대상

○ **(내용)** 특별지원급여 **'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'** 추가 지원

- (월 한도액) 매월 40시간(561천원), 최대 6개월, 본인부담금 없음
- (지원기간) 읍면동 접수·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('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)

□ 신청 및 대상자 선정

○ **(신청)**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**읍면동 주민센터**에 신청서류 제출

※ 대리신청도 가능하며, 신규·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

- (신청서류)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('03년~'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·중·고 재학생의 경우, 재학증명서* 1부)

*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. 단,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
○ **(선정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이 아닌 **별도 공문**으로 처리

❶ **(읍면동)**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, 신청서류 스캔본과 신청자 정보를 **시군구로 송부**

※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,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

❷ (시군구)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**시도로 문서 보고**

※ 신청자 주민번호, 이름, 시·군·구, 읍면동 접수・확인일 송부

※ 시도 보고로 선정절차 종결하고,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

□ 급여의 이용 및 지급

○ **(이용)** 수급자는 읍면동 접수・확인 즉시 가능하며,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**매월 40시간(561천원) 한도 내에서 이용**할 수 있음

※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, **활동지원사**는 반드시 **급여제공기록지 작성**

- (이용기간) **읍면동 접수・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** (단, '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)

※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5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·확인 및 서비스 이용·청구 가능

○ **(급여비용 청구)** 활동지원기관은 **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**하고, **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**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**예외지급 청구***

* (화면경로) 전자바우처시스템 ≫ 서비스제공관리 ≫ 예외지급결제 ≫ 예외지급청구

- (청구기한) **실제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내 청구**(단, '21년 12월 31일 18시 이후에는 청구불가)

*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이후 청구건은 예외지급 불가

* 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'21.12.31.(금) 18시 이후에는 청구불가

- (청구등급 및 사유) **'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'***

*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'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'을 선택해야 하며,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

- (지급 승인)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*, 청구내역이 부적정**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

* (화면경로) 전자바우처시스템 ≫ 예탁금관리 ≫ 예외지급관리 ≫ 예외지급승인

** 급여제공기록지 누락, 청구내역 불일치, 이용기간 초과, 청구사유・등급 오류, 허위청구 등

- (사후관리)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

□ **협조요청 사항**

○ **지자체(시군구 등) 담당자**

- **(예탁)** '장애인 긴급·특별돌봄 지원' 내역을 위한 예탁계좌 별도 없음 → 해당 내역으로 받은 예산을 **'활동지원급여' 예탁계좌로 입금하여 집행**

- **(홍보독려)** 수급자 중 초·중·고교생 재학생이 최대한 5월이내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**활동지원기관 안내 및 독려**

- **(전출시 예외청구 승인)**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, 이용자가 통보한 **전출일 전에 반드시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 전액 예외청구 승인**

○ **활동지원기관 담당자**

- **(홍보독려)**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 초·중·고교생 재학생 수급자가 최대한 5월 중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**보호자, 당사자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자, 카톡, 그 외 홍보방법 등을 통해 널리 홍보**

- **(전출시 예외청구)**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, 이용자가 통보한 **전출일 전에 반드시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 전액을 예외 청구로 완료하고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**

○ **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**

- **(타 시군구 전출시 통보)**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 중에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, 활동지원기관 담당자가 전출 전에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에 대해 모두 예외청구할 수 있도록 **전출일을 사전에 반드시 통보할 것**(타 시군구로 전출 후에도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그대로 이용할 예정이라도 반드시 통보.)

참고 코로나19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Q&A

‹‹ 신청 관련 ››

Ⓠ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?

Ⓐ 아닙니다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Ⓠ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(보호자일시부재 등)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가능합니다.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Ⓠ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?

Ⓐ 아닙니다.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.

Ⓠ 중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
Ⓐ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Ⓠ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, 신청 가능한가요?

Ⓐ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Ⓠ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, **해당 학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서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**

Ⓠ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?

Ⓐ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2003년 출생~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, **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.**

Ⓠ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장애유형과 관계 없습니다.

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아닙니다.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Ⓠ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아닙니다.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‹‹ 서비스 이용 관련››

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?

Ⓐ 가능합니다.

Ⓠ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?

Ⓐ 가능합니다.

Ⓠ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?

Ⓐ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, 월 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

Ⓠ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?

Ⓐ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.

Ⓠ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?

Ⓐ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.

‹‹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››

Ⓠ 신청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?

Ⓐ 불가능합니다. 읍면동 접수・확인 후부터 최대 6개월까지(단, ‘21년 12월 31일까지) 이용 가능합니다.

Ⓠ 561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?

Ⓐ 매월 40시간(561천원)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.

Ⓠ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Ⓐ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.

Ⓠ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지급 청구를 90일 이후에 할 수는 없나요?

Ⓐ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을 위해 9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.
(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‘21.12.31.(금) 18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.)

Ⓠ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지급 청구를 할 때, 예외지급 청구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?

Ⓐ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,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.